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7 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강경숙・김준형・차규근

조 국・황운하・신장식

박은정 • 진선미 • 김재원

김문수 · 문정복 · 이해민

서왕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(이하 "관계회복 프로그램" 이라 함)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,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 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 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2제3항 중 "프로그램(이하 "관계회복 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권유할 수 있다"를 "프로그램(이하 "관계회복 프로그램"이라 한다)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,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	제13조의2(학교의 장의 자체해결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	③
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	
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	
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	
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	
계회복을 위한 <u>프로그램(이하</u>	<u>프로그램(이하</u>
"관계회복 프로그램"이라 한다)	"관계회복 프로그램"이라 한다)
을 권유할 수 있다.	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,
	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
	<u>수 있다.</u>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